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서명옥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·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5조)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이 은 정)